2026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필수·의무 교육 안내

□ 보육사업안내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

교육명		근거	내용
보수교육	보육교직원·원장 직무교육	근거	• 영유아보육법 제23조, 제23조의2, 시행규칙, 제11조의 2, 제 20조, 제39조의 4
		교육 대상	•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 •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
		교육 시간	• 40시간
		교육 정보	• **[보육교사]** -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(승급교육을 포함)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※ 보조교사, 연장전담교사, 대체교사 등 동일 적용(근무시간과 무관하게 2년의 근무 기간으로 함) • **[원장]** -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※ 현직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함
	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	근거	• 영유아보육법 제23조, 제23조의2, 시행규칙, 제11조의 2, 제 20조, 제39조의 4
		교육 대상	•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
		교육 시간	• 40시간
		교육 정보	• 반드시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(채용 이전)까지 교육을 받아야 함 - 다만,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, 집합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**※ 제외대상 ※** - 만 2년 이내에 보육업무경력 또는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- 기존 40시간 이상의 시간과 관계없이 보육업무 경력이 있고,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
	특별 직무교육	근거	• 영유아보육법 제23조, 제23조의2, 시행규칙, 제11조의 2, 제 20조, 제39조의 4
		교육 대상	• 영아·장애아·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• 영아·장애아·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※ 보조교사, 연장전담교사, 대체교사 등 동일 적용(근무시간과 무관하게 2년의 근무 기간으로 함)
		교육 시간	• 40시간
		교육 정보	• 영아·장애아·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•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
	보육교직원 승급교육	근거	• 영유아보육법 제23조, 제23조의2, 시행규칙, 제11조의 2, 제 20조, 제39조의 4
		교육 대상	•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: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지난 사람 •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: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 - 다만,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보육업무경력이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※ 승급을 위한 보육교사 경력은 자격증 상의 자격인정일 이후 어린이집 임면일을 기준으로 산정
		교육 시간	• 80시간
		교육 정보	•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
	어린이집 원장 사전 직무교육	근거	• 영유아보육법 제23조, 제23조의2, 시행규칙, 제11조의 2, 제 20조, 제39조의 4
		교육 대상	• 일반, 가정, 영아전담,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
		교육 시간	• 80시간
		교육 정보	• 2014. 3. 1.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 •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

□ 보육교직원 의무교육[11종] – 관련 링크 :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(csia.or.kr)

교육명	근거	내용
보육교직원 안전교육	근거	•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별표8,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(p.118)
	교육 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교육 주기(시간)	• 연 1회(3시간)
	교육 정보	• 교육 과정 : 기본, 심화, 영아담당교사Ⅰ,Ⅱ, 유아담당교사Ⅰ,Ⅱ과정 중 택 1 • 내용 :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, 영유아 안전교육 방법 등 • 방법 : 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내 온라인 교육 수강
	교육 기관	• 어린이집안전공제회
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(어린이안전교육,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)	근거	•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
	교육 대상	• 보육교직원 * 안전관리 담당자, 주된 업무가 교육, 보육, 상담,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
	교육 주기(시간)	• 매년 1회(4시간 이상 : 이론 2시간, 실습 2시간) *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실시
	교육 정보	• 내용 : 응급상황 행동요령, 주요 내·외과적 응급처치 이론,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등 • 방법 : 행안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수강 * 실습은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
	교육 기관	• 어린이집안전공제회 ※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경우 온라인 이론교육만 운영
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	근거	• 「아동복지법」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
	교육 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교육 주기(시간)	• 연 1회(1시간 이상)
	교육 정보	• 내용 : 아동학대 관련 법령,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,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• 방법 : 집합교육, 시청각교육, 인터넷 강의 등
	교육 기관	• 아동권리보장원,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
사회적 장애 인식개선교육	근거	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
	교육 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교육 주기(시간)	• 매년 1회(1시간 이상)
	교육 정보	• 내용: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등 • 방법 :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,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 • 실적 : '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'에 입력 * 실적관리시스템(https://www.able-edu.or.kr/intro.do)
	교육 기관	• 한국장애인개발원

교육명	근거	내용
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	근거	•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
	교육 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교육 주기(시간)	• 매년 1회(1시간 이상)
	교육 정보	• 내용: -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-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-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• 방법 : 집합교육, 인터넷 강의 등
	교육 기관	• 한국보건복지인재원
성폭력 예방교육	근거	•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
	교육 대상	• 매년 1회(1시간 이상) * 신규 임용 시 임용 후 2개월 이내
	교육 주기(시간)	• 연 1회(1시간이상, 신규 임용 시 임용 후 2개월 내)
	교육 정보	• 내용: -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- 성인지(性認知)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-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- 그 밖의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• 방법 : 강의, 시청각교육,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, 대면(對面)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• 실적 : '예방교육통합관리' 실적 등록(https://shp.mogef.go.kr/shp/front/main.do)
	교육 기관	•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
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교육	근거	• 「결핵예방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2
	교육 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교육 주기(시간)	• 매년 1회
	교육 정보	• 내용 : 결핵 현황,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의 이해, 어린이집에서의 결핵 관리 • 방법 : 집합교육, 인터넷 강의 등
	교육 기관	• 대한결핵협회
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	근거	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
	교육 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교육 주기(시간)	• 매년 1회(1시간 이상)
	교육 정보	• 내용: -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-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-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-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• 방법 : 집합 교육,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원격 교육
	교육 기관	•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
등·하원 안전교육	근거	•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2
	교육 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교육 주기(시간)	• 매년 1회
	교육 정보	• 내용 : 영유아의 등·하원 방법, 보호자 지정 등을 포함한 등·하원 안전교육
	교육 기관	• 어린이집안전공제회 ※ 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

교육명	근거	내용
고농도 미세먼지·오존 대응교육	근거	•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(p.111)
	교육 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교육 정보	• 내용 :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
	교육 기관	• 어린이집안전공제회 ※ 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
자살예방교육	근거	•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
	교육 대상	• 모든 보육교직원
	교육 주기(시간)	• 매년 1회 이상
	교육 정보	• 내용: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, 자기 이해와 돌봄·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,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사항, 자살 문제와 현황,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, 자살위기 대응 기술, 그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• 방법 : 집합교육,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• 실적 :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시스템 내 결과보고(https://edu.kfsp.or.kr/perform)
	교육 기관	•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(https://edu.kfsp.or.kr/edu/common/greeting.do)

□ 근로자 법정교육[4종] – 관련 링크 :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(csia.or.kr)

교육명	근거	내용
개인정보보호 교육	근거	•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
	교육 대상	• 개인정보취급자
	교육 주기(시간)	• 매년 1회
	교육 정보	• 내용: - 개인정보의 개념 및 중용성 -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-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과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-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방법 및 예방대책 • 방법 : 자체교육, 온라인교육, 외부강사 초빙 등
	교육 기관	• 한국인터넷진흥원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	근거	•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
	교육 대상	• 사업주 및 근로자
	교육 주기(시간)	• 매년 1회 이상
	교육 정보	• 내용: -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-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-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-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• 방법 : 직원 연수, 조회, 회의,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 *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어느 한 성(性)으로만 구성된 경우 교육 자료 게시 및 배포로 대체 가능
	교육 기관	• 고용노동부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	근거	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
	교육 대상	• 사업주 및 근로자
	교육 주기(시간)	• 매년 1회(1시간 이상)
	교육 정보	• 내용: -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-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-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• 방법 : 직원 연수·조회·회의 등의 집합교육,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, 체험교육 등
	교육 기관	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
퇴직연금 교육	근거	•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
	교육 대상	•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* 제외 대상 :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,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
	교육 주기(시간)	• 매년 1회 이상
	교육 정보	• 내용 :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• 방법 : 집합교육, 온라인 교육, 서면 교육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
	교육 기관	• 퇴직연금사업자 개별 문의 또는 근로복지공단

□ 대상자별(담당업무,규모별)의무교육[10종] – 관련 링크 :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(csia.or.kr)

교육명	근거	내용
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	근거	•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
	교육 대상	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책임자(담당 보육교직원)
	교육 주기(시간)	• 2년에 1회(4시간 이상) -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경우: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-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: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-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: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
	교육 정보	• 내용: -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-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-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
	교육 기관	• 행정안전부
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	근거	• 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,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5
	교육 대상	•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, 운전자, 동승보호자
	교육 주기(시간)	• 신규교육 : 어린이통학버스 운영, 운전, 동승하기 전 • 정기교육 : 2년마다 1회(3시간 이상)
	교육 정보	• 내용: -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-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법령 -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주요 사고 사례 분석 - 그밖에 운전 및 승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• 방법 : 강의,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, 오프라인 교육
	교육 기관	• 한국도로교통공단(오프라인 교육) • 한국도로교통공단(온라인 교육)
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	근거	•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
	교육 대상	• 지정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
	교육 주기(시간)	• 신규교육: 8시간 이상 *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• 보수교육 : 2년마다 4시간 이상 * 신규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
	교육 정보	• 내용: - 건축물 석면관리 - 석면지도의 이해 및 관리 -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역할 -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법 등
	교육 기관	• 환경부
소방안전 관리자 교육	근거	•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, 제29조
	교육 대상	•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(소방안전관리보조자)
	교육 주기(시간)	• 강습교육 : 자격 취득 과정 • 실무교육 : 2년에 1회 *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(8시간) *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(4시간)
	교육 정보	• 내용: -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-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-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요령 -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등 • 방법 : 집합교육,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
	교육 기관	• 한국소방안전원

교육명	근거	내용
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	근거	•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
	교육 대상	•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
	교육 주기(시간)	• 신규교육 : 선임 후 3개월 이내(4시간) • 보수교육: 3년에 1회(4시간)
	교육 정보	• 내용 : 승강기 관계 법령, 승강기 구조 및 원리, 긴급사항 및 인명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, 승강기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• 방법 : 집합교육, 현장교육, 인터넷 원격교육 등
	교육 기관	•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
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	근거	•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(p.122)
	교육 대상	•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
	교육 시간	• 매년 1회
	교육 정보	• 내용 : 영유아 성행동 문제 지도 및 대응방법 ※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 문제 관리·대응 매뉴얼 참고
	교육 기관	•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
성희롱·성폭력 고충 담당자교육	근거	•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」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, 2024년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(p.97)
	교육 대상	• 고충 담당자(상담원)
	교육 주기(시간)	•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 1회
	교육 정보	• 내용: - 성인지 감수성,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- 성희롱(성폭력) 관련 법제도, 사례 분석 -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기술 훈련
	교육 기관	•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
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	근거	•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
	교육 대상	• 연면적 430㎡이상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
	교육 주기(시간)	• 신규교육: 1년 이내 1회(6시간) • 보수교육: 3년마다 1회(6시간) * 면제조항 별도 확인
	교육 정보	• 내용: -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 - 실내공기질 향상 방법 -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이용 및 활용 등 • 방법 : 집합교육, 사이버교육
	교육 기관	• 한국환경보전원
식품위생에 관한 교육	근거	• 「식품위생법」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
	교육 대상	•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기관장
	교육 주기(시간)	• 매년 1회(3시간) * 집단급식소를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6시간
	교육 정보	• 내용: 식품위생, 개인위생, 식품위생시책, 식품의 품질관리 등 • 방법 : 집합교육,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 교육 * 집단급식소를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집합교육
	교육 기관	• 한국식품산업협회

교육명	근거	내용
조리원, 영양사 위생교육	근거	• 「식품위생법」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, 84조
	교육 대상	•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조리사, 영양사
	교육 주기(시간)	• 매년 1회(6시간)
	교육 정보	• 내용: - 식품위생 법령 및 시책 - 집단급식 위생관리 -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-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 - 그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• 방법 : 집합교육, 인터넷 교육
	교육 기관	• (사)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• (사)대한영양사협회